#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10 발의연월일: 2024. 7. 2.

발 의 자 : 남인순 · 김 윤 · 최기상

정성호 • 이병진 • 염태영

김남근 • 조계원 • 김남희

복기왕 • 민형배 • 박홍배

문진석 · 진선미 · 박지원

오세희 • 이수진 • 박해철

강준현 • 박희승 • 전진숙

황명선 · 양부남 · 정준호

위성곤・부승찬・이기헌

윤건영 · 김영배 · 강훈식

이재관 • 이광희 • 김주영

송재봉 • 이용우 • 이재강

서미화 · 문대림 · 박용갑

의원(3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회서비스원 운영의 근거 법률로, 사회서비스원은 현재 전국 16개 시·도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보육, 요양 등의 돌봄 서비 스와 장애인의 활동지원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직접서비스 제공을 포함하여 돌봄의 공공성·전문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설 립되었음.

하지만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치 권력 교체로 인해 사회서비스원을 정치적 판단에 의해 폐지하거나 통폐합 시도를 하는 등 법률의 제정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현재 보건복지부가 사회서비스원을 전달체계로 추진 중인 여러 사업들이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행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어 지역별로 격차가 발생할우려가 있는 상황임.

이에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시작된 사회서비스원 사업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의무화 하며, 사업 수행에 필요한 국고보조,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우선위탁, 시·군·구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의 근거 마련 등 규정을 보완·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시·도에서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의무적으로 설립·운영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 나. 신규로 설립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을 시·도 사회서비스원에 우선적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2항제1호).
-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도 서비스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9조).
- 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의 공공 돌봄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시

·군·구 사회서비스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장의2 신설).

법률 제 호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설립·운영할 수 있다"를 "설립·운영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민간이 참여하기 어렵거나 공급이 부족한 분야에 신규로"를 "신규로"로 한다.

제28조제3항제6호 중 "자치구를 말한다"를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29조 중 "설립·운영에"를 "설립·운영 및 사업 수행에"로 한다. 제2장의2(제30조의2 및 제30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의2 시·군·구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 등

제30조의2(시·군·구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등) ① 시장·군수·구청 장은 관할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군·구의 지역 내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군·구 사회서 비스원(이하 "시·군·구 서비스원"이라 한다)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 ② 시·군·구 서비스원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구 서비스 원의 설립·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④ 시·군·구 서비스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 ⑤ 시·군·구 서비스원의 설립, 설립등기, 업무 범위, 출연금의 지급·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0조의3(시·군·구 서비스원의 운영 등) 제30조의2에서 정한 사항외에 시·군·구 서비스원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3조부터 제27조(제2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 서비스원"은 "시·군·구 서비스원"으로,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시·도"는 "시·군·구"로 본다.

제39조제1항 중 "시·도 서비스원에"를 "시·도 서비스원 및 시·군· 구 서비스원에"로 한다.

제40조 중 "시·도 서비스원"을 "시·도 서비스원, 시·군·구 서비스 원"으로 한다. 제41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로, "시·도 서비스원"을 "시·도 서비스원, 시·군·구 서비스원"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업무를 관리·감독하며, 시·도지사는 시·도 서비스원의 업무를"을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업무를, 시·도지사는 시·도 서비스원의 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서비스원의 업무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 사회서비스원 또는 시·도 서비스원"을 각각 "중앙 사회서비스원, 시·도 서비스원"을 각각 "중앙 사회서비스원, 시·도 서비스원 또는 시·군·구 서비스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도지사는"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관할 시·도서비스원에"를 "관할하는 사회서비스원에"로, "관할 시·도 서비스원의"를 "관할하는 사회서비스원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중앙 사회서비스원 또는 시·도 서비스원"을 "중앙 사회서비스원, 시·도 서비스원 또는 시·군·구 서비스원"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시·도 서비스원"을 "시·도 서비스원 및 시·군·구 서비스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도 서비스원"을 "시·도 서비스원 및 시·군·구 서비스원"으로 한다.

제44조 중 "시·도 서비스원"을 "시·도 서비스원, 시·군·구 서비스 원"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제7조(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설
립) ①
<u>설립·운영하여야</u>
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사업의 우선위탁) ① (현
행과 같음)
②
1. <u>신규로</u>

-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 ③ (생략)
- 제28조(시·도 서비스원 정책심 의위원회) ①·② (생 략)
  - ③ 시·도 정책위원회의 위원은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 1. ~ 5. (생략)
  - 6. 시·도 및 시·도 관할 시·군·구(<u>자치구를 말한다</u>) 업무 관련 공무원
  - ④ (생 략)
- 제29조(보조금 등)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도 서비스원의 <u>설립·운영</u> <u>에</u>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③ (현행과 같음)
제28조(시・도 서비스원 정책심
의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
<u> </u>
③
,
1. ~ 5. (현행과 같음)
6
<u>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u>
<u>다</u>
④ (현행과 같음)
제29조(보조금 등)
<u>설립·운영</u>
<u>및 사업 수행에</u>
제2장의2 시・군・구 서비스원의
설립・운영 등
제30조의2(시・군・구 사회서비
스원의 설립 등) ① 시장·군
<u>수·구청장은 관할하는 시</u>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의 공공 돌봄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시·군·구 사회서비스원(이하 "시·군·구 서비스원(이하 "시·군·구 서비스원"이라 한다)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 ② 시·군·구 서비스원은 법 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구 서비스원의 설립·운영 및 사 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④ 시·군·구 서비스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금·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 ⑤ 시·군·구 서비스원의 설립, 설립등기, 업무 범위, 출연 금의 지급·사용 등에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9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시 •도 서비스원에 관하여 이 법 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지방출자출연법을 준용 한다.

#### ② (생략)

- 제4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u>시·도 서비스원</u> 또 는 중앙 사회서비스원이 아닌 자는 사회서비스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 다.
- 제4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 위탁) ① (생 략)
  -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 ② -----

제30조의3(시・군・구 서비스원
의 운영 등) 제30조의2에서 정
한 사항 외에 시・군・구 서비
스원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
13조부터 제27조(제2항은 제외
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
·도 서비스원"은 "시·군·구
서비스원"으로,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시
·도"는 "시·군·구"로 본다.
제39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u>시</u>
·도 서비스원 및 시·군·구
<u>서비스원에</u>
② (현행과 같음)
제4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시·도 서비스원, 시
<u>·군·구 서비스원</u>
제4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
위탁) ① (현행과 같음)

-----<u>보건복지부장</u>

관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중앙 사회서비스원, 시·도 서비스원 또는 관련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2조(지도·감독 등) ① 보건복 저지부장관은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업무를 관리·감독하며, 시안도 서비스원의 업무를 관리·감독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중앙 사회서비스원 또는 시·도 서비스원에 대하여 그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중앙 사회서비스원 또는 시·도 서비스원 또는 시·도 서비스원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조사 또는 질문을하게 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u>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u>
<u>수·구청장의</u>
<u>\lambda\</u> .
도 서비스원, 시·군·구 서비
<u>스원</u>
베42조(지도·감독 등) ①
의 업무를, 시·도지사는 시·
도 서비스원의 업무를, 시장・
<u>군수·구청장은 시·군·구 서</u>
<u>비스원의 업무를</u>
②
<u>중앙 사회서비스원, 시·도</u>
<u>서비스원 또는 시·군·구 서</u>
비스원
중앙 사회서비스원,
시·도 서비스원 또는 시·군
<u>·구 서비스원</u>
③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관할 시·도 서비스원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 시·도 서비스원의 사무소 또는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조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 ④ • ⑤ (생 략)

⑥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감독상 필요한 경우 중앙 사회서비스원 또는 시· 도 서비스원에 대하여 정관이 나 규정의 변경, 조직의 개편 등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조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제43조(기부금품의 접수) ① <u>시·</u> 기 <u>도 서비스원</u>은 자발적으로 기 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 목적 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u>시·도 서비스원</u>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을 별도 계 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u>• 구청장은관할</u>
하는 사회서비스원에
관할하는 사
회서비스원의
④·⑤ (현행과 같음)
⑥ <u>보건복지부장관</u>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u>중앙 사회서</u>
비스원, 시·도 서비스원 또는
시·군·구 서비스원
제43조(기부금품의 접수) ① <u>시·</u>
도 서비스원 및 시・군・구 서
비스원
② 시·도 서비스원 및 시·군
<u>·구 서비스원</u>

### ③ (생 략)

제4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시·도 서비스원 또는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임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③ (현행과 같음)
제4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
제) <u>시·도 서비스원, 시·군·</u>
<u>구 서비스원</u>